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9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안희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7.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단20564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44,215,7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변제행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80,085,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85,0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15,7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변제행위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액배상금을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의 합계액으로 확장하여 주위적 청구로 삼는 한편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일부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C에 전자제어기기 등을 판매하였다.
- 2) 원고는 2019. 7. 31.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 22.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8,545,0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381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변제 및 채권양도

- 1) 주식회사 C는 2019. 6. 17. 피고에게 외상매출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변제행위).

2) 주식회사 C는 2019. 7. 4. 피고에게 외상매출금 2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변제행위).

3) 주식회사 C는 2019. 7.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44,215,754원의 채권을 양도하고(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9. 7. 30. 주식회사 H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폐업

1) 주식회사 C는 2019. 9. 16. 폐업하였다.

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은 2019. 10. 1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하단3394, 2019하면3394). 위 면책 사건에서 I은 2022. 3. 3.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C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C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주식회사 C의 무자력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액은 718,250,0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1,970,065,900원이다(아래 내역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적극재산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할 뿐 이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가) 적극재산

○ 부천시 D건물 제4층 E호 : 718,250,000원

나)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 78,545,060원

○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 157,793,245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1,420,634,428원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 20,509,140원

○ 구로세무서장 부과 국세 : 73,708,290원

○ 구로구 지방세 : 7,518,260원

○ 부천시 지방세 : 954,700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 133,120,000원

○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 77,282,777원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C가 1,071,196,957원의 재고자산,
750,007,175원의 외상매출채권, 20,651,000원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을 제7, 8, 11호증(각 재고 현황, 외상매출채권 현황, 자산 현황)은 주식회사 C가 임의로 작성한 내역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주식회사 C의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이 53,577,540원으로, 2019. 6. 30.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위 주장과 같은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재고, 외상매출채권, 동산 등의 가액이 앞서 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넘는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는 J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K 사이에 2019. 7. 25. 체결된 주식회사 L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36)에서 ‘주식회사 C가 2019. 7. 25.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J 주식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회사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종래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이후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부천시 D건물 제4층 E호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피담보채무도 채권최고액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점, ② 주식회사 C는 2019. 4. 이후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연체하였고, 2019. 5.분 이후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으며, 구로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인 2019. 6. 11. 위 부동산을 압류한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 여러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M은행, N은행,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20.자로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부실처리 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2019. 9. 16. 폐업한 점, ④ 주식회사 C는 자금난과 거래처 상실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린 시점에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피고에게 2019. 6. 17. 30,000,000원, 2019. 7. 4. 22,000,000원을 변제한 데 이어 2019. 7. 29. 주식회사 H에 대한 44,215,754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2019. 3. 31.까지 거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주식회사 C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의 대표이사 O은 주식회사 C의 설립일인 2012. 9. 4.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8. 5. 8.부터 2019. 12. 10.까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주식회사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주식회사 C와 피고의 관계, 주식회사 C의 재산과 영업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상회복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직접 자신에게 변제로 수령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그 양도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44,215,754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44,215,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변제행위를 하였다. 이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95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20.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C가 2018. 12. 1.부터 2020. 1. 31. 사이에 피고에게 한 각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원인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C가 피고와 결탁하여 위 기간 피고에게만 편중적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변제행위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등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서증(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서증은 2020. 4.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9. 9. 청구취지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제1심은 2021. 3. 11.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 각종 채무 내역과 연체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주식회사 C의 무자력, 피고와의 통모 등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22. 6. 2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변제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거래처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2020. 4. 7.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1. 3. 11.경에는 주식회사 C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각 변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2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 판사 권성우

